

## [공통사항]

- ◆ **시민안전공제는?**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는 동 상품에 가입한 회원(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시·군·구민)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 ◆ **보장기간**
  - ☛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 ◆ **보장내용**
  - ☛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가입담보 중 담보별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 **주요용어**
  - ㉠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회원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 공제수익자 :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
    - 피공제자 생존 시 : 본인 / 사망 시 : 법정상속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 상해 :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 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장해분류표 적용)
- ◆ **공통면책사항**
  - ㉠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
  - ㉣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 ◆ **소멸시효**
  -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감염병 사망]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감염병의 범위**
  - ☛ 제1항의 “감염병”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 정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감염병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타목에서 규정한 신종감염병증후군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커목에서 규정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단, 감염병에 의한 사망의 인정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 용어의 정의
  - ㉠ 개 물림사고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합니다.
  - ㉡ 응급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합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화상수술비]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5]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수술보상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보상금만 지급합니다.
  
- ◆ 용어의 정의
  - ㉠ 화상 : [별표5]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 수술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공제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등의 의사(한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는 제외합니다)의 관리 하에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 ※ 단,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실버존 사고 치료비]

<p>◆ 보상하는 손해 (만65세 이상)</p>	<p>➤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2]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p>
<p>◆ 교통사고의 정의</p>	<p>㉠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p> <p>㉡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p>
<p>◆ 자동차의 범위</p>	<p>㉠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p> <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p> <p>※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p>
<p>◆ 주요면책사항</p>	<p>㉠ 공통면책사항의 사유</p> <p>㉡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p> <p>㉢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p> <p>㉣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p> <p>㉤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p>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p>◆ 보상하는 손해 (만12세 이하)</p>	<p>➤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p>
<p>◆ 사고의 정의</p>	<p>㉠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p> <p>-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p> <p>-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p> <p>㉡ 자동차</p> <p>-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p> <p>※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p>
<p>◆ 주요면책사항</p>	<p>㉠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및 회원이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p> <p>㉡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p> <p>㉢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p> <p>㉣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p> <p>㉤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p>